

2024년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시상 공고

혁신적인 브랜드경영 체계 도입을 통한 우수한 브랜드경영 성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브랜드에 시상을 추진하고자, 2024년도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시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4. 06. 05.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『2024년 제26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시상 요령』

1. 시상 개요

주최 : 산업통상자원부

주관 : (사)산업정책연구원

시상 기본방향

- 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핵심 가치로 브랜드가 대두됨에 따라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브랜드경영 체계를 도입하여 산업 경쟁력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브랜드에 대해 정부 시상
- 브랜드경영을 경쟁력 강화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(기업/사업부문), 지방자치단체, 기타 기관 및 단체가 보유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본 시상을 실시함

2. 시상의 종류

○ 총 10점

부문	시상 분류 및 종류	시상 수
브랜드경영	○ 대상 (대통령상)	1점
	○ 최우수상 (국무총리상)	1점
	○ 우수상 (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)	6점
	○ 장려상 (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상)	2점

3. 시상 신청 자격요건

가. 신청자격

신청 대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기업(기업/사업부문), 지방자치단체, 기타 기관 및 단체가 보유한 브랜드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 도입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, 일자리 창출, 수출 확대 등 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기업(기업/사업 부문)의 브랜드, 기타 기관 및 단체의 브랜드-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을 위해 브랜드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제품/ 서비스/ 도시 브랜드 <p>※ 기업 브랜드와 제품 및 서비스 브랜드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업 브랜드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</p> <p>※ 각 기업, 지방자치단체, 기타 기관 및 단체는 보유하고 있는 여러 브랜드로 중복지원 가능함</p>

나. 시상 기준

□ 재포상 금지

-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(브랜드경영분야)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재포상 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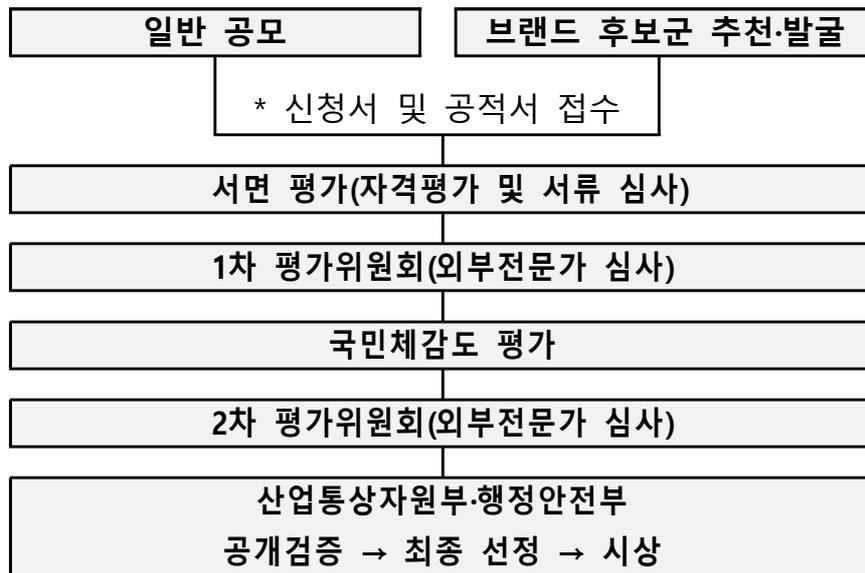
□ 시상 제한

-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 등을 받은 단체 및 기관
-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및 기관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법인) 및 기관 등
 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법인 및 지자체행정기관)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 - 다만,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
 -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 및 기관은 추천을 제한함
 - 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 및 기관은 추천을 제한함

- 다만,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(단체포함) 및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
 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
 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
 - ※ 시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신청 가능
-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법인(단체 포함) 및 기관
 - ※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www.share.go.kr)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- 사회적 물의 등 유발
 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시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(기관)
- 기타
 - 상훈법(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) 및 산업통상자원부 포상업무 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(단체 포함) 및 기관은 추천 및 신청을 제한함
 - ※ 정부시상 수여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시상을 취소할 수 있음

다. 브랜드 후보군 발굴 및 신청 접수

- 브랜드 후보군 발굴과 함께 일반적인 응모형식의 신청을 통해 우수 브랜드 후보군을 적극 확보하여 브랜드 포상의 질 향상을 도모
- 브랜드 후보군 발굴 및 일반 공모에 따른 브랜드 후보군을 대상으로 신청서 및 공적서 접수
- 추진 절차



4. 선정 방법 및 심사기준

가. 선정 방법

- 서면 평가(자격평가 및 서류 심사): 정부시상 신청 대상자(기업 및 기관 등)의 시상 제한요건(위법 현황 및 결격사유 등)과 관련한 자격 여부에 대한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서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충실성을 평가
- 1차 평가위원회 심사: 서면 평가에서 선정된 브랜드에 대해 공적서를 바탕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외부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1차 평가 및 점수 채점

- 국민 체감도 평가: 1차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평가 후보로 상정된 브랜드에 대해 일반 국민 및 국민 브랜드 평가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국민 참여 심사 진행
- 2차 평가위원회 심사(최종 선정): 최종 선정평가 후보로 상정된 브랜드에 대해 공적서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수상 브랜드 선정
 - ※ 국민 체감도 결과를 최종 심사점수에 반영
 - ※ 최종심사 대상 브랜드 담당자들의 브랜드경영 상의 핵심 이슈 및 성과 요약 등의 내용으로 브랜드별 20분 내외의 발표평가 진행
- 수상 확정: 최종 수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공개검증(15일)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상 대상을 최종 확정

나. 심사기준

○ 주요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

심사항목		세부 심사항목	배점
브랜드 경영현황 (1/2차 공통항목)	브랜드경영 정책(25)	• 브랜드경영 비전과 전략	7.5
		•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유지 전략	7.5
		• CEO/단체장의 브랜드경영 의지	5
		•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	5
	브랜드경영 활동(30)	• 전사적 브랜드경영 체계 및 실행	9
		• 브랜드 진단, 평가의 정기적인 실시여부	6
		• 브랜드 보호 실태 및 관리체계	6
		• 브랜드경영 전담 부서 및 인력 현황(최근3년)	3
		• 브랜드 관련 전문인력 신규채용 현황(최근3년)	3
		• 내·외부 브랜드 교육 실시여부	3
브랜드경영 성과(25)	• 우수한 브랜드경영 성과	7.5	
	• 시장성 및 성장성, 해당시장에서의 경쟁력	7.5	
	• 지역/국가경제 발전에의 기여도	5	
	• 지역/국가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	5	
1차	적격성(20)	• 미디어 검색 결과(최근1년)	20
2차	국민 체감도(20)	• 적격성	10
		• 인지도	5
		• 호감도	5
총점			100

5. 신청 및 접수 방법

가. 접수 기간

- 신청서 접수 기간: 공고일 ~ 2024. 09. 06(금)
- 공적서 접수 기간: 공고일 ~ 2024. 09. 23(월)

나. 제출서류

구분		서식	이메일 제출	우편 및 방문 제출
1	대한민국브랜드대상 신청서	서식 1호	○	○
2	공적서	서식 2호	○	
3	정보이용동의서	서식 3호	○	○
4	장관상장에 대한 동의서	서식 4호	○	○
5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서식 5호	○	○
6	시상 제한사항 체크리스트	서식 6호	○	○
7	브랜드경영 우수사례 개발 동의서	서식 7호	○	○
8	사업자등록증 사본	-	○	
9	재무제표 감사보고서(최근 3개년) *기업 및 기관에 한함 재무 데이터(최근 3개년) *지자체 제품 및 서비스 브랜드에 한함	-	○	
10	모든 제출서류(1~9번)가 저장된 USB 1개	-		○
*신청서 접수 기간 내 [서식 1호] 신청서 이메일 제출 필수				
*기타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한 참고자료, 인쇄물 등은 우편 및 방문 제출 가능				

※ 제출서류 양식은 (사)산업정책연구원 홈페이지(www.ips.or.kr > 시상&행사 > 대한민국브랜드 대상)에서 서류를 다운받은 후 작성

다. 제출 방법

-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 기간 내 우편 혹은 방문 제출
 - 접수처: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203, 7층(대현동, 핀란드타워)
산업정책연구원 브랜드디자인본부
대한민국브랜드대상 시상담당자 앞

※ 우편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, 방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오후 5시

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함.

- 문의처: 산업정책연구원 브랜드디자인본부

☎ 02) 360-0775, 0788 .✉ hjyeo@ips.or.kr, sjlee3@ips.or.kr

라. 신청료: “없음”

6. 추진일정

가. 신청접수

- 신청서 접수 기간: 공고일 ~ 2024. 09. 06(금)
- 공적서 접수 기간: 공고일 ~ 2024. 09. 23(월)

나. 심사일정

- 1차 평가위원회 : 2024년 10월 진행 예정
- 국민참여심사 : 2024년 10월 진행 예정
- 2차 평가위원회 : 2024년 11월 진행 예정

다. 시상

- 일자 : 2024년 12월 11일(수)
- 장소 : 수상기관 별도 안내
- ※ 시상식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7. 기타 혜택

가. 참여 혜택

- 브랜드 경영 우수 사례개발 및 게재
 - 취지: 수상 기업의 브랜드경영 내용을 제 3자 입장에서 사례로 작성하여 벤치마킹 자료 및 홍보자료로 활용

- 특징: 홈페이지 게재, 경영관련 학회지 게재, 신문/잡지 등의 기획 기사화, 외부 배포용 책자 발간 등
- 대상: 수상 기업
- 효과: 제출된 공적서를 기준으로 제 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례화하여 우수한 브랜드 경영에 대한 외부 홍보효과 기대

나. 엠블럼 사용

- 수상한 기업 및 기관은 대한민국브랜드대상의 엠블럼 사용 가능

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신청기관 「공적서」 작성요령 및 양식

♣ 작성 방법

- 허위 및 가공 없는 정보 및 데이터를 근거로 브랜드경영 현황 및 성과 작성
 - 최근 3년 이내의 브랜드경영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, 시계열 검토가 가능하도록 3개년 데이터를 제공
 - 보고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표, 그림 등 보조 수단 활용 가능
- 공적서의 각 항목에 대해 신청 브랜드경영 현황, 성과 및 향후 계획 서술
 - 공적서는 ①신청기관 및 브랜드경영 개요 ②신청 브랜드경영 현황으로 나누어 작성
 - 최근 3년 이내의 브랜드경영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, 시계열 검토가 가능하도록 3개년 성과 작성
- 공적서는 50매 이내에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
 - A4, 좌철로 작성함.
 - 첨부 사항이 있을 시 별도 첨부 가능함(면수에 미포함)
- 제출 서류

구분		서식	이메일 제출	우편 및 방문 제출
1	대한민국브랜드대상 신청서	서식 1호	○	○
2	공적서	서식 2호	○	
3	정보이용동의서	서식 3호	○	○
4	장관상장에 대한 동의서	서식 4호	○	○
5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서식 5호	○	○
6	시상 제한사항 체크리스트	서식 6호	○	○
7	브랜드경영 우수사례 개발 동의서	서식 7호	○	○
8	사업자등록증 사본	-	○	
9	재무제표 감사보고서(최근 3개년) *기업 및 기관에 한함 재무 데이터(최근 3개년) *지자체 제품 및 서비스 브랜드에 한함	-	○	
10	모든 제출서류(1~9번)가 저장된 USB 1개	-		○
*신청서 접수 기간 내 [서식 1호] 신청서 이메일 제출 필수				
*기타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한 참고자료, 인쇄물 등은 우편 및 방문 제출 가능				

공적서 【①신청 기관 및 브랜드경영 개요】

♣ 귀 기관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◦ 기관 소개, 연혁, 주요 사업 관련 내용 기재

♣ 다음은 귀 기관의 브랜드경영에 대한 사항입니다.

구분	2021년	2022년	2023년	평균
가. 브랜드경영 성과 / (단위 : 백만 원, %)				
- 신청기관 매출액				
- 자본금 (기말잔액)				
- 매출액 영업이익률				
- 신청 브랜드 매출액				
나. 브랜드 전담 인력 현황 / (단위 : 명)				
- 총 종업원 수 (매년 12월 말 기준)				
- 브랜드 전담 부서 인력				
- 브랜드 관련 인력 신규채용				

공적서 【②신청 브랜드경영 현황】

- ♣ 신청 브랜드경영 현황에 대하여 본 시상의 심사항목(공고문 6페이지 참고)에 맞추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♣ 자유형식(한글, 파워포인트 모두 가능)으로 귀사의 현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◦ 브랜드경영 정책, 브랜드경영 활동, 브랜드경영 성과 관련 내용 기재

장관상장에 대한 동의서

(장관상장 후보자용)

장관상장 후보자

성명			
소속(주소)		직위(급)	

위 본인은 제 26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에 대한 장관상장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본인은 장관포상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상장의 취소 등 장관상장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
2024. . .

성명

(서명)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

(장관상장 후보자용)

< 개인정보 제공 동의 >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1.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장관상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, 장관상장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
2.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
 - 개인정보 항목 : 성명(단체명, 한자), 주소, 직업, 소속, 직위 및 등급(직급, 계급), 근무기간, 주요경력, 군번(군인의 경우), 국적, 과거포상
 - 민감정보 항목 : 징계, 형벌 (해당 시에 수집·이용)
3.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 표창기록부는 영구,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

위와 같이 2024. . 일 개인정보를 수집 ·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합니다.

동의하지 않습니다.

성명

(서명)

위와 같이 2024. . 일 민감정보(해당 시)를 수집 ·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합니다.

동의하지 않습니다.

성명

(서명)

<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 제공 동의 >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상장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1.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장관상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, 장관상장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, 상훈수여증명서 발급
2. (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) 주민등록번호
3. (수집근거) 정부 표창 규정 제27조(대통령령 제31380호)
4.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 표창기록부는 영구, 상장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

위와 같이 2024. . 일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를 수집 ·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합니다.

동의하지 않습니다.

성명

(서명)

시상 제한사항 체크리스트

다음은 정부시상 제한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.
해당하는 항목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	해당	해당없음
1	채포상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년 이내 동일분야(브랜드경영분야) 정부시상 수여 여부 	<input type="checkbox"/>
2	형사처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근 3년 이내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 받은 단체 및 기관 	<input type="checkbox"/>
3	상훈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근 3년 이내 「상훈법」 제 8조 및 「정부표창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 취소 여부 	<input type="checkbox"/>
4	산업안전보건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 	<input type="checkbox"/>
5	공정거래관련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	<input type="checkbox"/>
6	근로기준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근 3년간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 	<input type="checkbox"/>
7	체납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사업장(단체 및 기관) 	<input type="checkbox"/>
8	사회적 물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근 1년간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 논란 여부 	<input type="checkbox"/>

※ 추후 필요 시 위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※ 정부시상 수여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시상이 취소될 수 있음

대표 : (직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

